

가평자이

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구비서류 안내

■ 일정안내

구분	일시	장소
서류접수 기간	2021.02.15(월) ~ 2021.02.20(토)	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94-1 가평자이 견본주택

■ 당첨자 자격서류 제출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자격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서류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용도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발급용)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신청 시 제출생략
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혼인여부확인
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/세대원	•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내역 전부 포함 발급
	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) [※건강(의료)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(의료)보험증제출가능]
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(신청자)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(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)
	개인정보활용동의서	-	• 당사 견본주택 비치
특별공급신청서 / 무주택약서	-	• 당사 견본주택 비치	
추가 (서류해당자)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•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
	기본증명서	자녀	•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
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/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 해야함) ※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 되어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
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	본인/배우자	• 입양의 경우
	출산이행확인각서	본인/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 ※ 당사 견본주택 비치
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비사업자의 경우 ※ 견본주택 비치
	복무확인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(다만,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)

■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(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)

위임장(견본주택 비치), 인감증명서(용도: 당첨자 자격서류 신청용(본인발급용에 한함)),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직계존·비속 포함)

※ 상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.22) 이후 발급분에 한함
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※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포함 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예 : 870101-1111111)

가평자이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(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)

공급유형	구분	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신혼부부 우선공급 (기준소득, 75%)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 이하	5,554,983원	6,226,342원	6,938,354원	7,594,083원	8,249,812원	8,905,541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 이하	6,665,980원	7,471,610원	8,326,025원	9,112,900원	9,899,774원	10,686,649원
신혼부부 일반공급 (상위소득, 25%)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	100%초과~ 120%이하	5,554,984원~ 6,665,980원	6,226,343원~ 7,471,610원	6,938,355원~ 8,326,025원	7,594,084원~ 9,112,900원	8,249,813원~ 9,899,774원	8,905,542원~ 10,686,649원
	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	100%초과~ 130%이하	5,554,984원~ 7,221,478원	6,226,343원~ 8,094,245원	6,938,355원~ 9,019,860원	7,594,084원~ 9,872,308원	8,249,813원~ 10,724,756원	8,905,542원~ 11,577,203원
	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	120%초과~ 130%이하	6,665,981원~ 7,221,478원	7,471,611원~ 8,094,245원	8,326,026원~ 9,019,860원	9,112,901원~ 9,872,308원	9,899,775원~ 10,724,756원	10,686,650원~ 11,577,203원
	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	120%초과~ 140%이하	6,665,981원~ 7,776,976원	7,471,611원~ 8,716,879원	8,326,026원~ 9,713,696원	9,112,901원~ 10,631,716원	9,899,775원~ 11,549,737원	10,686,650원~ 12,467,757원

- 기준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,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%초과시 일반공급 25% (상위소득) [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(월평균 소득기준 120%초과~130%이하)]을 선택하여야 합니다.
 - 상위소득 :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,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
 - 2020.09.29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(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)에는 일반공급 기준소득을 10%씩 완화 적용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	
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근로소득자용소득금액증명서 (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)	①해당직장②해당직장/세무서	
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①,②해당직장	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원본 : 직인날인)	①,②해당직장
	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*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*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/ 간이과세자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,②해당직장
	간이과세자 중소득세 미신고자	*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(원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)	*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, 국민연금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*국민연금관리공단 *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	①세무서②등기소
	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*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	①세무서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자금 조서(직인날인) 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영수증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	①해당직장②국민연금공단	
무직자	* 비사업자 확인각서(견본주택에 비치) ※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	*접수장소	

※ "비사업자 확인 각서"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만19세 이상의 세대원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현재 무직자일 경우에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